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

발 의 자: 한창민·박주민·박은정

조 국・윤종오・정춘생

강경숙 · 정을호 · 박정현

용혜인 · 김 윤 · 서미화

문정복 · 강유정 · 김선민

차규근 • 민병덕 • 전종덕

서왕진 · 정혜경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 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.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'저출산'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 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'저출생'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. 이에 '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'이라는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,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명 등).

법률 제 호

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"을 "저출생·고령사회기본법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, "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"를 "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"로, "국가의 지속적인 발전"을 "공공복리"로 한다.

제2조 중 "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,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"을 "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며,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을 만드는"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및 제1절의 제목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7조의2 중 "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

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"을 "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·고령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, 인구정책 및 저출생·고령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"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보건복지부장관은"을 "제23조에 따른 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"으로, "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"를 "위원회의 심의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변경"을 "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. 이하같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"를 "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전단 및 후단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은"을 "위원회는"으로,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

"저출산·고령사회정책"을 "저출생·고령사회정책"으로, "심의"를 "심의·조정"으로, "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"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6호 중 "저출산"을 각각 "저출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1인"을 "1명, 부위원장 1명, 상임위원 1명"으로, "25인"을 "30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"고령화 및 저출산"을 "저출생 및 고령사회 정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이 경우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제3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.
- 2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-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

고,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3(시·도 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도의 저출생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생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 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 사 소속으로 시·도 인구정책기획단을 둔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·도위원회와 시·도 인구정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26조 전단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30조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중 "인구구조 불균형이"를 "인구구조변화가"로, "저출 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31조 중 "저출산"을 "저출생"으로 한다.

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저출산 · 고령사회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 ·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 · 고령사회위원회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저출산 • 고령사회기본법	저출생 • 고령사회기본법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저출산</u> 및 인	제1조(목적) <u>저출생</u>
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	
응하는 <u>저출산</u> ·고령사회정책	<u>저출생</u>
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	
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	
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	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
민의 삶의 질 향상과 <u>국가의 지</u>	
<u>속적인 발전</u> 에 이바지함을 목적	
으로 한다.	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<u>국가의</u>	제2조(기본이념) <u>개인의</u>
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	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하고 공
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	정한 사회를 구현하며, 인구변
하고,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	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사회로의
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	<u> 혁신을 만드는</u>
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	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 <u>저출산</u> ·고령사회정책"이라	2 <u>저출생</u>
함은 <u>저출산</u> 및 인구의 고령화	<u>저출생</u>
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	
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	
한다.	<u>.</u>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<u>저출산</u>	무) ① <u>저출생</u>
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	
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	<u>저출생</u>
<u>저출산</u> 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	
어 지역의 사회 · 경제적 실정에	
부합하는 <u>저출산</u> ·고령사회정	<u> 저출생</u>
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	2
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	
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	
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	
제20조의 규정에 의한 <u>저출산</u> ・	<u>저출생</u>
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	
야 한다.	
제5조(국민의 책무) ① 국민은 출	제5조(국민의 책무) ①
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	
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	
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	
가 시행하는 <u>저출산</u> ·고령사회	<u>저출생</u>
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	
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	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는 <u>저출산</u> ・고령사회정책과 관	<u>저출생</u>
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	
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	

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

제1절 <u>저출산</u> 대책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는 <u>국민이 저출산 및</u>
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
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
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
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
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
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저출산</u>·고령 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·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·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(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기본계 획) ① 정부는 <u>저출산</u>·고령사 회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

제2장 <u>저출생</u>
제1절 <u>저출생</u> 대책
제7조의2(인구교육)
인구구조 변화와
저출생·고령사회로 인한 사회
경제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
해를 높이고, 인구정책 및 저출
생・고령사회 정책의 필요성을
인식
.
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
<u>저출생</u>

- 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<u>저출산</u> · 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"기본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 하여야 한다.
- ② <u>보건복지부장관은</u>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 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<u>변경</u>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정책의 기 본목표와 추진방향
- 2. ~ 3. (생략)
- 4. 그 밖에 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정 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④ ~ ⑤ (생 략)
- 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~ ② 저 (생 략)
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
② 제23조에 따른 저출생・고령
사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
<u>다)는</u>
<u>위원회의 심의</u>
변경(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
<u>제외한다. 이하 같다)</u>
3
1. <u>저출생</u>
O (원체가 가수)
2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저출생</u>
④ ~ ⑤ (생 략)
에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~ ②
(현행과 같음)
③

-저출생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22조(업무의 협조) ① (생 략)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 관련 계 획 및 정책, 관련 자료 또는 의 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

위원회
에 제출하여야 한다.
4
<u>저출생</u>
<u>저출생</u>
·.
⑤ (현행과 같음)
세22조(업무의 협조) ① (현행과
같음)
② <u>위원회는</u>
<u>저출생</u>

청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3조(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위원회)

- ①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<u>저출산</u>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·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에 관한 사항
- 2. <u>저출산</u> · 고령사회정책의 중· 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- 3. ~ 4. (생 략)
- 5. <u>저출산</u> · 고령사회정책의 조 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<u>저출산</u> · 고령사회정 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<u>제</u>
 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</u>을 포함 한 <u>2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•
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<u>저출생</u> ·고령사회위원회)
① <u>저출생·고령사회정책</u>
심의·조정
 저출
생·고령사회위원회
②
<u>.</u>
1. <u>저출생</u>
2. <u>저출생</u> ·
3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저출생</u>
6 <u>저출생</u>
 대통
<u>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③1명, 부위원장
<u> 1명, 상임위원 1명</u> 30
명
<u> </u>

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. 위 | ④ -----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<후단 신설>

1. (생략)

<신 설>

2.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 며,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 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⑥ (생략)

제23조의2(위원회의 사무기구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(생 략) <신 설>

- 이 경우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 명은 제3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
- 1. (현행과 같음)

지명한다.

- 2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 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
- 3. 저출생 및 고령사회 정책에-

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전문

⑥ (현행과 같음)

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23조의2(위원회의 사무기구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23조제3 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 으로 하고,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23조의3(시・도 저출생・고령사

제26조(관계행정기관의 협조) 위원회는 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저출산</u>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

회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관
할 시·도의 저출생·고령사회
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
구축하고 저출생·고령사회정
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·의결
하기 위하여 시·도 저출생·고
령사회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
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시・도지사는 시・도위원회
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
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인구
정책기획단을 둔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·도위
원회와 시·도 인구정책기획단
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
<u>항은 조례로 정한다.</u>
제26조(관계행정기관의 협조)
<u>저출생</u>
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
<u>저출생</u>

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

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저출산</u>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0조(민간의 참여)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<u>저출산</u>·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다.

제30조의2(인구의 날) ① <u>인구구</u> <u>조 불균형이</u>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<u>저출산</u>ㆍ고령화 대응에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다.

② (생략)

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저출산</u>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 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 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

 제30조의2(인구의 날) ① <u>인구구</u> <u>조변화가</u> <u>저출생</u>
 ② (현행과 같음) 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<u>저출생</u>

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 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 제32조(지원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제32조(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에 따른 사업수행실적이 우 수한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